

# 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0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

2. 개정이유

- 다자녀 및 가정 친화적 육아환경 조성과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 보장 확대, 일·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자율적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제29조 제1항 “별표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” 개정
 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“1일” 에서 “3일” 로 확대
- 제29조 제2항~제7항, 제9항, 제10항 출산, 육아관련 특별휴가 문구 개선
  - 자율적·능동적 표현으로 개선(허가하되 → 사용할 수 있으며,  
받을 수 있다 → 사용할 수 있다)
- 제29조 제6항 육아시간 확대 개정
  - “5세” 를 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” 이하로 하고,  
육아시간 사용기간을 “24개월” 범위에서 “36개월” 범위로 확대
- 제29조 제8항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
  - “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” 를 “해당 직원의 자녀(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,

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)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로 한다. 다만,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및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유급휴가 일수로 한다.” 로 개정

제13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14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

# 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1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

2. 개정이유

- 직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제20조 제1항 각호 개정

1. 4급에서 3급 : 3년6월이상 → 2년이상
2. 5급에서 4급 : 2년이상 → 1년이상
3. 6급에서 5급 : 2년이상 → 1년이상
4. 7급에서 6급 : 1년6월이상 → 1년이상

제13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0월 14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